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282
----------	------

2023년 12월 21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 신복자 의원 외 28명 공동발의

나. 제 안 일 : 2023년 10월 9일

다. 회 부 일 : 2023년 10월 23일

라. 상 정 일 : 제321회 서울시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2023년 12월 21일 상정·의결 (원안 가결)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초선의원은 임기가 개시되는 7월 1일부터 원 구성, 추가경정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함에도, 임기 개시 전까지 의회조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직무역량을 쌓을 기회가 없어 임기개시 직후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 특히 초선의원의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지방의회 특성상 의정의 연속성,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뿐만 아니라 의원 당선인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2023.9.14.).
- 이에 개정안은 의원당선인을 기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의 적용범위에 포함하여 초선의원이 당선인 신분 기간부터 의회조직과 의정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회의실습 등 의정연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의원당선인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의 적용범위에 포함함 (안 제2조제1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병수)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당선인(이하 “의원당선인”)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 적용범위에 포함하여 초선의원이 당선인 신분 기간부터 의회조직과 의정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회의실습 등 의정연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2 의원당선인을 교육연수 적용범위에 포함 (안 제2조제1호)

- 개정안은 제2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의회의원”에 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고 있음.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2. (생략)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현행과 같음)
제3조(기본원칙)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적극·발굴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 ⑥ (생략)	제3조(기본원칙) ① 의장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적극·발굴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구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주민의 의사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주민 복리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사회와 지방행정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지방의회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수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초선의원의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임. 지방의회의 제6기부터 제9기까지 선수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의회의 초선의원 평균 비율이 광역의회의 경우 66%, 기초의회의 경우 53%를 상회함.

<지방의회의원 선수 현황>

(단위 : 명(%))

구분		의원정수	초선	2선	3선	4선 이상
제9기 (2022.7~ 2026.6)	광역	872	594 (68.1)	215 (24.7)	47 (5.4)	16 (1.8)
	기초	2,987	1,666 (55.8)	861 (28.9)	313 (10.5)	147 (4.9)
제8기 (2018.7~ 2022.6)	광역	829	615 (74.2)	136 (16.4)	68 (8.2)	10 (1.2)
	기초	2,927	1,717 (58.7)	721 (24.6)	340 (11.6)	149 (5.0)
제7기 (2014.7~ 2018.6)	광역	794	433 (54.5)	271 (34.1)	71 (8.9)	19 (2.4)
	기초	2,898	1,460 (50.4)	916 (31.6)	376 (13)	146 (5)
제6기 (2010.7~ 2014.6)	광역	762	529 (69.4)	166 (21.8)	58 (7.6)	9 (1.2)
	기초	2,512	1,282 (51.0)	847 (33.7)	274 (10.9)	109 (4.3)

자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23

-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의회의 제8대부터 제11대까지의 선수현황을 살펴보면, 초선의원의 비율은 제9대를 제외하고 70%를 넘음.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선수 현황>

(단위 : 명(%))

구분	의원정수	초선	2선	3선	4선 이상
제11대	111	82 (73.2)	24 (21.0)	3 (2.7)	2 (1.8)
제10대	110	81 (73.6)	16 (14.5)	12 (10.9)	1 (0.9)
제 9대	106	50 (47.2)	46 (43.3)	6 (5.6)	4 (3.7)

구분	의원정수	초선	2선	3선	4선 이상
제 8대	114	95 (83.3)	13 (11.4)	5 (4.3)	1 (0.8)

자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 이러한 특징 가운데, 초선의원은 임기가 개시되는 7월 1일부터 원 구성, 추가경정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함에도 재선 이상 의원보다 의회조직에 대한 이해와 기본적인 직무역량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한계가 있음.
- 지방의회 구성의 높은 유동성에 따라 발생하는 의정의 연속성·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고, 의원들의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음.¹⁾
- 이에 개정안은 초선의원이 당선인 신분 기간부터 의회조직과 의정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회의 실습 등 의정연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임.
- 한편, 「지방자치법」이 '23.9.14. 일부개정되어 지방의회가 소속 의원 뿐만 아니라 의원당선인의 전문성 확보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지방자치법 제46조>

개정 전	개정 후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생략)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

1)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의회 교육훈련 현황과 과제」, 2018

	한다)_____.
--	-----------

- 동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원당선인의 전문성 확보에 대한 지방의회의 노력 의무를 조례에 명확히 정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 또한, 개정안이 적용대상으로 두고자 하는 의원당선인의 범위를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 2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정한 것은 상위법과 모순·충돌하지 않으므로 법체계상 타당함.
- 소관 부서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는 입장으로,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의원당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 등의 근거가 명확해진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의원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함.
- 다만, 조례가 개정될 경우 입법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의원당선인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지방의회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초선의원은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반면, 다선의원은 실무교육보다 지방아카데미 등 프로그램을 통해 어젠다를 장악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등 지방의회의원의 선수에 따라 프로그램을 달리하여야 하는 의견이 있음.²⁾

2)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2022, p.55.

3 종합 의견

-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의 적용대상에 의원당선인을 포함하여 의원당선인이 임기개시 전부터 교육연수 등을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특히 초선의원의 비율이 높은 지방의회 현실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이들의 교육연수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원당선인의 전문성 나아가 의정의 연속성을 도모하는 데 입법적 의의가 있음.
-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고, 적용대상의 범위가 상위법과 모순·충돌하지 않으므로 법체계상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동 조례의 개정에 따라 의원당선인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여 입법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도모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재적의원 12명, 출석위원 10명, 찬성 10명)

7.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복자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282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10월 09일

발 의 자: 신복자, 경기문, 곽향기,
김경훈, 김길영, 김동욱,
김영철,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춘선,
박환희, 심미경, 옥재은,
왕정순, 유만희, 윤기섭,
이민옥, 이병윤, 이봉준,
이숙자, 이원형, 최민규,
허 훈, 홍국표 의원(29명)

1. 제안이유

- 초선의원은 임기가 개시되는 7월 1일부터 원 구성, 추가경정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함에도, 임기개시 전까지 의회조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직무역량을 쌓을 기회가 없어 임기개시 직후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 특히 초선의원의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지방의회 특성상 의정의 연속성,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뿐만 아니라 의원 당선인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2023.9.14.)
- 이에 개정안은 의원당선인을 기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여 초선의원이 당선인 신분 기간부터 의회조직과 의정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회의실습 등 의정연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원당선인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의 적용범위에 포함함(안 제 2조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의장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적극 발굴·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적용한다. 1. <u>서울특별시회의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u> 2. (생 략)	제2조(적용범위) ----- -----. 1. <u>서울특별시회의의원(「공직 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 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회의 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u> 2. (현행과 같음)
제3조(기본원칙) ① <u>의장은 의원 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 교육연수프 로그램을 적극 발굴·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u> ② ~ ⑥ (생 략)	제3조(기본원칙) ① <u>의장은 서울 특별시의회의의원(이하 “의원”이 라 한다)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 교 육연수프로그램을 적극 발굴·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u> ② ~ ⑥ (현행과 같음)

문 서 번 호

2023100600000020

미첨부 사유서 (1호)

요 청 인 : 신복자 의원

담 당 : 오희선 과장
이정수 팀장
박지영 주무관

접 수 일 : 2023.10.06.

회 신 일 : 2022.10.10.

내용문의 : 02-2180-7952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
재정분석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적용범위) 제1호, 제3조(기본원칙) 제1항을 변경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11,200천원(연평균 2,24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11,2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비용은 지방의회 선거 일정에 맞춰 2026년 1회 발생하는 것으로 전제
- 같은 조례안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에 따라 자체교육연수 비용이 발생하고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2023년 의원 교육연수활동 운영 지원계획 중 자체교육과정 예산을 준용하여 의원 당선인 1인당 10만원 교육비(강사료) 지원하며 1회 실시하는 것으로 전제
- 의원 당선인 정원은 제11대 의원 정원(112명)과 같다고 전제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합계) = 11,200천원(연평균 2,240천원)

- 총비용 = 의원당선인 자체교육연수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의원당선인 자체교육연수	-	-	11,200	-	-	11,200
	소계(b)	-	-	11,200	-	-	11,200
□ 총 비용(b-a)		-	-	11,200	-	-	11,200

-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자체 교육연수) = 11,200천원
= 100,000원×112명×1회

※ 붙임 1. 2023년 의원 교육연수활동 운영 지원계획 참조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 무 관	박지영

☎ 02-2180-7952
e-mail : 7magic7@seoul.go.kr

붙임 1. 2023년 의원 교육연수활동 운영 지원계획



2023년 의원 교육연수활동 운영 지원계획



2023. 2.

서울특별시의회

2023년 의원 교육연수활동 운영·자원계획

관련조례에 근거하여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에 따른 2023년의 의원 교육연수활동의 운영과 자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

I 추진 개요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교육연수 시행계획)
-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의장방침 47호, '23.2.13.)

□ 추진 방향

-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의 중점과제에 따른 세부 계획 수립
- 수요자 중심의 교육연수활동 운영과 지원 실행방안 마련

II 현황 및 요구 분석

1. 추진 현황

□ '22년 추진 실적

- 의원 맞춤형 교육으로 역량개발 강화
 - － 제11대 의원 교육 수요도 조사 실시 : 77명/112명(응답률 69%)
 - － 수요도 반영, 의원 개인별 맞춤형 교육 3개 과정 개발, 운영 : 3회/76명
 - * 교육과정: 여성의원 리더십 워크숍, 1:1 스피치코칭, Match-making program
 - － 국회의정연수원 등 공공교육기관의 전문교육과정 이수 : 7회 /81명('21년 3회/22명)
 - －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민간위탁교육 실시 : 8회 /36명('21년 14회/52명)

○ 교육연수활동 실행기반 조성으로 교육환경 마련

- 온라인 학습지원시스템 구축과 교육 실시 : 8회 /375명('21년 5회/243명)
- 자체교육 전 과정 평가(만족도 조사) : 4.36점 /5점('21년 미 실시)

□ 개선점

- 교육평가(만족도 조사 등) 확대 시행 : 의무, 자체교육 → 위탁교육
- 수요중심 교육과정과 콘텐츠 도입 : 수요조사 → 교육평가 반영
- 교육과정 및 기관 추가 발굴 : 직무역량 → 전문성 함양 위한 다양한 분야

2. 요구 분석

□ 교육평가

- (기간/평가대상) '22년 7.~ 12. / 자체교육
- 의무(법정) 교육 : 4점 이상의 만족도는 높으나, 구성과 시스템 정비 필요

교육과정	만족도	서면 응답
폭력예방 (여성가족부)	4/5점	화면구성이 약간 지루합니다. 다양한 사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청렴 (국민권익위원회)	4.36/5점	한 강의당 시간이 길어서 갑자기 일이 생기는 경우 중단했다 다시 듣기 어려웠습니다.
이해충돌방지 (국민권익위원회)	4.34/5점	필요한 내용이지만 전반적으로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예방 (보건복지부)	4.37/5점	아동학대 예방은 관심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유익한 교육이었습니다.
장애인식개선 (보건복지부)	4.34/5점	과정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구성이 좋습니다 장애 정도와 종류에 따른 응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 직무(역량) 교육 : 높은 만족도 만큼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교육과정	만족도	서면 응답
(온라인) 초선의원 교육과정 1	4.58/5점	선배 의원님들의 현실적이고 꼭 필요한 설명이 큰 도움
(온라인) 초선의원 교육과정 2	4.50/5점	
1:1 스피치 코칭	미진행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 전문적 피드백 좋았음 의원의 이미지 중요함 상기 계기 조음점에 대한 이해 발음과 정확성에 많은 도움 교육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다
(이화여대 공동) 여성 리더십 워크숍	미진행	평상시 생각해 보지 못한 강의 많은 도움 사회이슈에 대한 의정활동 방향 수립에 도움 말로만 들던 이슈에 구체적 알게 되어 매우 유익 더 많은 분들이 함께했으면 하는 아쉬움

□ 수요도 조사

○ (기간/대상) '23년 1.16~1.27/ 시의원 112명 중 30명 응답(응답률 26.7%)

1. 교육형태	자체교육	기관 공동교육	기관 위탁교육	온라인교육	기타
	15%	27%	20%	35%	3%
2. 교육방법	강의식	참여식	참여식(소규모)	온라인	온라인(화상)
	19.5%	19.5%	19.5%	29.3%	12.2%
3. 교육과정 (참여희망율)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 직무과정 (참여 80%)	16.7%	58.3%	8.3%	4.2%	
2) 정책 이해과정 (참여 53.3%)	37.5%	31.3%	12.5%	18.8%	
3) 미래전략 과정 (참여 66.7%)	25%	45%	10%	10%	
4) 소통역량 강화과정 (참여 63.3%)	21.1%	31.6%	15.8%	5.3%	
5) 사회공헌 과정 (참여 26.7%)	25%	12.5%	12.5%	37.5%	
6) 재난대비 과정 (참여 36.7%)	27.3%	18.2%	27.3%	18.2%	

- 교육형태에 대해서는 외부기관과의 공동운영과 위탁형태를 가장 선호함.
- 교육방법은 강의식, 참여식, 온라인 방식에서 고른 응답 결과가 나타남.
- 교육과정은 직무, 정책이해, 미래전략 과정을 선호하며, 1:2분기 개설을 희망함.

Ⅲ 추진 전략

□ 수요자 중심의 교육 운영과 교육 활성화

- (교육 운영) 수요에 따른 과정개설과 시기를 조율, 교육비 지원 단위 확대
- (안내 및 홍보) 교육 참여를 유도하는 적극적 홍보와 독려 방안 마련
- (대외 협력) 교육과정의 공동, 위탁 운영과 우수 콘텐츠 공유 추진

Ⅳ 세부 추진내용

1. 교육 운영

□ 의무교육(5개 과정)

- 교육내용
 - 청렴 : 4시간,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 이해충돌방지 : 2시간,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 권익위 협업, 대면교육 추가 실시
 - 폭력예방 : 4시간,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양성평등진흥원) 제공
 - 장애인식개선 : 1시간,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제공
 - 아동학대예방 : 1시간,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제공

○ 이수방법 : 의정플러스 내(內) 학습지원시스템 접속, 온라인 이수 실시

※ 원내대표실 및 상임위원회 단위 (대면)교육 시 이수 인정

○ 교육평가 : 각 교육과정 이수 후 만족도 조사 이행 (미이행시 수료 불가)

□ 자체교육(4개 과정) * 의원 1인당 40만원 교육비(강사료) 지원

○ 직무역량 강화과정

－ 교육내용 : 의정활동에 관한 기본지식, 기술 습득 도모

· (기본) 상임위원회 단위 실시, 조례입법, 예·결산, 행정사무감사 교육

· (심화) 기본과정의 심화된 내용에 대한 개인별 교육

－ 이수방법

· (기본) 상임위원회별 교육 수요조사 이행, 희망 일시에 따른 교육 진행

· (심화) 개인별 교육수요에 따라 강사 섭외, 강사료(교육비) 지원

○ 정책이해 교육과정

－ 교육내용 :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지식 함양

－ 이수방법 : 외부(연구)기관과 공동운영 예정, 세부사항 별도 안내

○ 미래전략 교육과정

－ 교육내용 :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고취와 통찰력 제고

－ 이수방법 : 국공립 및 민간대학과 공동운영 예정, 세부사항 별도 안내

○ 소통역량 강화과정

－ 교육내용 : 리더십의 기본요소인 소통역량 함양

· 스피치, SNS 활용 분야에 대해 개인별 선호에 따른 1:1 코칭 진행

－ 이수방법 : 개인별 교육수요에 따라 강사 섭외, 강사료(교육비) 지원

□ 위탁교육(공공 15개 과정, 민간 상시 안내)

○ (공공) 장기위탁 교육

- 교육내용

- 최고지도자과정(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반기별 1명 교육비 전액 지원
- AIC과정(서울대 행정대학원) : 최대 400만원 지원
- 의정정책 고위과정(서울시립대 도시환경) : 교육비 전액 지원

- 이수방법

- 각 교육과정 모집 시기에 교육과정 참여 확정 시 개인별 안내
- 민간 장기위탁교육 중복지원 불가, 임기 內 1회, 400만원까지 교육비 지원

○ (공공) 단기위탁 교육

- 교육내용

- 초선의원 기본(심화)과정(국회의정연수원) : 교육비 전액 지원
- 재선이상 의원 기본(심화)과정(국회의정연수원) : 교육비 전액 지원
- 맞춤형 지방의회 의원연수 과정(국회의정연수원) : 교육비 전액 지원
- 지방의원 기본과정(지방자치 인재개발원) : 교육비 전액 지원
- 지방의회 아카데미(지방자치 인재개발원) : 교육비 전액 지원
- 디지털 역량교육(지방자치 인재개발원) : 교육비 전액 지원
- 행감, 추경, 결산, 예산심사 심화과정(지방자치 인재개발원) : 교육비 전액 지원

- 이수방법

- 각 교육과정 모집시기에 교육과정 참여확정 시 개인별 안내

○ (민간) 단기위탁 교육 * 의원 1인당 60만원(민간) 교육비 지원

- 교육내용 : 직무역량을 비롯 다양한 전문분야 희망 교육시 교육비 지원
- 이수방법 : 희망교육과정 의정담당관 사전 문의, 향후 절차 안내

○ (민간) 장기위탁 교육

- 교육내용 : 직무역량을 비롯 다양한 전문분야 희망 교육시 교육비 지원
- 이수방법 : 희망교육과정 의정담당관 사전 문의, 향후 절차 안내
 - 공공 장기위탁교육 중복지원 불가, 임기 內 1회, 400만원까지 교육비 지원

2023년 교육비(강사료) 지원 사항

- 의원(개인, 소모임) : 자체교육 최대 40만원, 위탁교육 최대 60만원
 - 자체교육 : 직무역량 강화과정(심화) 또는 소통역량 강화과정 중 택1 지원
 - 위탁교육 : 민간(단기)위탁교육에 한함, 공공(단기)위탁 전액 지원
 - ※ 상반기 운영 실적 검토 후, 하반기 예산 범위에서 추가지원 검토
- 상임위원회 : 강사료 최대 40만원
 - 직무역량 강화과정(기본) 운영 시, 강사료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 원내대표실 : 강사료 연간 200만원 이내
 - 연중 워크숍, 특강시 강사료(여비 등 제외)에 한해 지원

V '23년 예산 집행(안)

사업명(과목)	항 목	세부내용	금 액
의정활동수행 (의원역량개발비)	- 기본교육(법정의무교육 등) - 직무교육(의원교육 프로그램) - 공공위탁교육	교육비 지원 (개인, 상임위, 원내대표실)	50,000천 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50,000천 원
		공공위탁교육	30,000천 원
	민간위탁교육	교육비 지원(개인)	66,000천 원
의회운영지원 (사무관리비)	온라인 교육콘텐츠	학습관리시스템 개선	30,000천 원
		교육콘텐츠 차용	30,000천 원
예 산			256.000천원